

■資料2

消費者被害補償規程

第1條(目的) 이 규칙은 消費者保護法 第12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消費者와 事業者間의
紛爭의 원활한 解決을 위하여 品目別로 消費
者의 被害를 補償할 수 있는 基準을 定함을
그 目的으로 한다.

第2條(適用原則) 物品을 購入하거나 用役을
提供받은 消費者가 關聯商品이나 用役의 品質,
價格, 去來條件 및 表示上의 不一致 등으
로 正當한 不滿을 提起한 때에는 製造業者,
販賣業者, 輸入業者 및 用役을 提供하는 者
(以下 “事業者”라 한다)는 原則적으로 이
基準이 定하는 바에 따라 補償하여야 한다.

第3條(補償) 이 規定에서 補償이라 함은 品質
保證期間 또는 有效期間(이하 “品質保證期
間”이라 한다) 以內에 製造·流通過程上 또는
用役의 利用過程中에서 發生한 消費者的 被害에
대하여 消費者에게 行하는 修理·交換·還
拂·賠償·解約·履行 등을 말한다.

第4條(補償責任者) ① 消費者 被害에 대한 補償
은 物品을 販賣하거나 用役을 提供하는 者가
第1次의 으로 補償責任을 진다. 다만, 輸入物品
의 경우는 輸入業者가 補償責任을 지며 品質
保證書 등에 補償責任者를 별도로 規定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第1項의 경우에 販賣業者는 關聯物品의
製造業者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
다.
③ 販賣業者가 疾業 또는 倒產한 경우에는
當該物品의 製造業者가 補償責任을 진다.

第5條(品質保證書) ① 事業者는 販賣時 消費者
保護法 第8條에 規定하고 있는 事項이 包含된
品質保證에 관한 內容을 記載한 證書(以下
“品質保證書”라 한다)를 交付하거나 그 內容
을 製品에 表示하고 이에 品質保證期間, 保證
條件 및 部品保有期間을 明示하여야 한다.
다만, 輸入業者가 製品의 品質保證에 관한
內容을 表示함에 있어서는 한글 또는 한글을
병기하여 表示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品質保證條件에는 최소한 이 基準
이 定하고 있는 補償基準의 內容을 表示하여
야 한다.

③ 事業者가 製品의 品質保證期間을 表示하지
않은 경우에는 消費者가 製品을 購入한 날로
부터 1年(食品의 경우 流通期限)을 品質保證
期間으로 본다.

④ 品質保證書에 販賣日字가 記載되어 있지
않거나 品質保證書의 未交付·紛失 등으로
정확한 販賣日字의 確認이 不可能한 경우에는
製造日로부터 12月이 經過한 날로부터 品質保
證期間을 起算한다.

第6條(領收證 등의 効力) 品質保證書 또는
이와 유사한 證書가 發給되지 않은 品目의
경우 稅法規定에 의하여 發給되는 領收證
또는 關聯類似製品의 品質保證書도 第5條의
品質保證書의 効力を 가진다.

第7條(補償期限) 事業者는 被害補償 要求를
받은 날로부터 7日以內에 補償與否 및 內容을
消費者에게 通報하여야 하며 補償期限은 通報

日로부터 14日을 超過할 수 없다.

第8條(費用負擔) ① 無償修理의 경우에는 修理에 所要되는 部品代 및 原資材費用 등 諸費用을 事業者가 負擔한다.

② 有償修理의 경우에는 修理 및 部品交換에 所要된 순수部品代 및 原資材費用에 한하여 消費者가 負擔한다.

③ 被害救濟를 目的으로 物品의 運搬費를 負擔한 消費者는 이 基準에 추가하여 그 實費補償을 要求할 수 있다.

第9條(價格還拂等) ① 消費者가 表示된 價格을 超過하여 物品을 購入했을 경우 事業者는 超過金額을 還拂하여야 한다.

② 消費者가 中古製品을 新製品價格으로 購入한 경우 그 差額을 還拂하거나 당해 new製品으로 交換해 주어야 한다.

③ 廣告 또는 表示와 製品의 內容이 不一致한 경우 消費者는 購入日로부터 30日以內에 還拂을 要求할 수 있다. 다만, 事業者의 訂正措置以後의 購入자는 還拂을 要求할 수 없다.

④ 製品의 使用說明書 內容이 不充分하거나 어려워 消費者가 被害를 입게 된 경우 事業者는 製品을 交換해 주거나 購入價格을 還拂하여야 한다.

⑤ 事業者가 契約條件을 不履行한 경우에는 消費者는 그 契約을 解除할 수 있으며 消費者가 契約解除에 따른 損害가 발생한 때에는

事業者에게 被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⑥ 訪問販賣에 있어서 詐欺·強迫에 의하여 契約을 締結한 때에는 그 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第10條(交換 및 還拂基準) ① 事業者가 製品의 瑕疵등으로 인하여 消費者에게 製品을 交換하여 줄 경우에는 同一製品으로의 交換을 原則으로 한다.

② 事業者가 消費者에게 價格을 還拂하여 줄 경우에는 購入價格 還拂을 原則으로 하며, 購入價格은 證書 또는 領收證에 記載된 金額을 基準으로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證書 또는 領收證을 保管하지 않아 購入價格에 紛爭이 있는 경우에는 적은 金額을 提示하는 者가 立證責任을 지며, 立證이 不可能한 경우에는 勸裝消費者價格으로 還拂한다.

第11條(調停依賴) 事業者 또는 消費者(以下 “當事者”라 한다)가 이 規程에 例示되지 않은 被害 類型에 對하여 補償合意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 當事者는 韓國消費者保護院에 그 調停을 依賴할 수 있다.

第12條(司法的 救濟) 이 規程에 依한 消費者 被害補償은 司法的 救濟 依賴를 排除하지 않는다.

第13條(品目 및 補償基準) 對象品目 및 品目別 被害補償基準은 別表와 같다.

〈별표 1〉 對象品目

區 分	品 種	該 當 品 目
1) 食料品 (19個 品種)	清涼飲料	콜라, 사이다, 환타, 유산균음료, 두유, 넥타류, 쥬스류, 드링크류, 보리음료 등
	菓子類	초코렛, 견과자, 비스켓, 미과, 스네류, 껌, 카라멜, 일시탕 등
	水菓類	아이스크림, 빙과, 유사냉동디저트 등
	酪農製品類	우유, 분유, 연유, 밀크유, 버터, 치즈, 이유식 등
	통조림類	과실, 해산물, 육류, 통조림 등
	製빵類	식빵, 파이, 떡, 빵, 참쌀떡, 카스테라 등
	설탕, 製粉類	정당, 물엿, 밀가루, 콩가루, 전분 등
	食用油類	참기름, 대두유, 옥배유, 낙화생유, 채종유, 쇼트닝유, 면실유, 팜유, 마야가린 등
	調味料	마요네즈, 케찹, 카레, 화학조미료, 식초, 소금, 고추분, 후추분, 겨자 등
	醬類	된장, 고추장, 간장, 춘장, 소오스 등
	茶類	커피, 홍차, 울무차, 녹차, 쟁차, 구기자차, 칡차, 생강차, 계피차 등

麵類	국수, 라면, 당면, 냉면, 인스탄트면류 등
고기加工食品類	햄, 소세지, 베이컨, 어육연제품 등
健 康 食 品	인삼, 꿀, 개소주, 영지버섯, 알로에, 화분 등
酒類	탁주, 소주, 청주, 맥주, 과실주, 양주 등
도 시 락	도시락
饌類	두부, 연두부, 묵, 단무지, 김치, 젓갈류 등
冷凍食 品	햄버거, 돈까스, 새우, 만두 등
飼 料	가축사료, 특수동물사료 등
2) 農·水·畜産品(6個品種)	과일·野蔬類 배, 사과, 복숭아, 토마토, 수박, 참외, 포도, 감, 바나나, 파인애플, 무우, 배추, 당근, 오이, 가지, 파, 마늘 등 水產物類 생선류, 조개류, 해조류, 건어물류 등 穀類 쌀, 보리, 콩, 조, 수수, 팔, 밀 등 卵類 계란, 메추리알 등 肉類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別表 2〉 品目別 補償基準

1. 食料品(19個品種)

品種	被害類型	補償基準	備考
○清涼飲類	1) 含量, 容量不足	當該製品 2 배	
○菓子類	2) 부패, 변질	교환 또는 購入價還拂	
○冰菓類	3) 流通期限 經過		
○酪農製品類	4) 異物混入		
○통조림類	5) 副作用	治療費, 經過 및	
○제빵類	6) 용기파손등으로 인한 상해사고	賃金賠償	
○설탕·製粉類			- 賃金은 被害로 인하여 賃金損害가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여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賃金은 政 府勞賃單價를 基準으로 한다.
○食用油類			
○고기加工食 品類			
○調味料			
○醬類			
○茶類			
○麵類			
○健康食品			
○酒類			
○도시락			
○찬류			
○冷凍食 品			

2. 農·水·畜產品(6個品種)

○卵類	1) 함량, 용량부족	當該製品 2 배	
○肉類	2) 부패, 변질	교환 또는 購入價還拂	
○穀類	3) 流通期限 經過		
○과일·야채류	4) 이물혼입		
○수산물류	5)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임금배상	
	6) 用器破損등으로 인한 傷害事故	"	- 賃金은 피해로 인하여 임금손해가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여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賃金은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